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587
건명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의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6년 4월 3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4월 28일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4월 30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587
----------	-----

제출년월 : 2026년 4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가칭)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및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복지분야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질 높은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 25개 자치구 40개 노인종합복지관 모두 위탁 운영 중

- 다년간 경험을 축적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대상자 맞춤 서비스 가능
-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대

다. 위탁사무 내용

-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 지역사회활동(어르신 사회활동, 지역기관 참여, 지역복지사업) 발굴 및 연계
- 외부사업 공모·참여 및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제공
-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라. 위탁개요

- 위 치: 동선동4가 342 외 2필지 * 동선2주택재개발구역 내
- 규 모: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2,837.63㎡(대지면적 710.47㎡)
- 개관일: 2027. 03월(예정) * 공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 현황사진 및 위치도



○ 시설현황

층 별	주 요 용 도	면 적 (공용면적 포함)
합 계		2,837.63 m ²
지상6층	• 경로식당, 조리실, 영양사실, 카페라운지	366.84m ²
지상5층	•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 건강상담실	366.80m ²
지상4층	• 프로그램실(2개), 서예실, 장기바둑실, 사회교육사무실	378.80m ²
지상3층	• 다목적강당, 휴게라운지	378.80m ²
지상2층	• 통합사무실, 관장실, 일자리상담실, 회의실, 문서고	403.19m ²
지상1층	• 주차장(12대), 부출입구	395.34m ²
지하1층	• (주출입구) 안내데스크, 상담실, 정보화교육장	365.12m ²
지하2층	• 기계실, 전기실	182.74m ²

○ 위탁예산: 1,768,781천원(시비 55% , 구비 45%)

- 인건비: 1,460,089천원(25명 12개월분)

- 운영비 및 사업비: 308,692천원

※ 2027년도 예산 편성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위탁기간: 2027. 01. 01. ~ 2031. 12. 31.(5년)

* 공사일정에 따라 협약체결일 조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사.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2026. 08.~09.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및 수탁기관 결정 2026. 10.
- 위·수탁 협약 체결 2026. 12.
- 민간위탁[개관준비] 2027. 0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참고사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40개소)

연번	자치구	구분	기관명	주소	설치일	대지(㎡)	건물	
							규모(층)	면적(㎡)
1	종로구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삼일대로 467	2001.04.01.	3,281.1	지하1/지상3	5,534.0
2	종로구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율곡로19길 17-8	2007.02.01.	2,188.4	지상1/지상5	4,795.1
3	중구	구립	약수노인복지관	다산로6길 11	1994.04.25.	371.0	지하1/지상5	979.1
4	용산구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독서당로11길 16	2002.04.01.	2,088.0	지하1/지상4	3,487.8
5	성동구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마조로 77	2000.10.02.	2,065.0	지하1/지상4	2,675.0
6	광진구	시립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군자로 88	2003.08.01.	1,735.0	지하2/지상4	3,596.1
7	동대문구	시립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제기로33길 25	2003.03.04.	2,899.0	지하2/지상4	2,749.6
8	동대문구	구립	동백꽃노인종합복지관	전농동 146	2024.12.01.	1,146.7	지하1/지상5	2,864.2
9	중랑구	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	겸재로9길 45	1999.12.01.	1,493.0	지하1/지상4	2,505.0
10	중랑구	구립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내로15길 175	2008.10.06.	4,058.0	지상1/지상3	2,872.0
11	성북구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종암로15길 10	1999.09.01.	1,021.0	지하1/지상5	2,595.0
12	강북구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삼양로92길 40	2000.10.02.	1,460.0	지하1/지상4	3,335.3
13	도봉구	시립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당로2길 12-13	2000.10.01.	1,708.0	지하1/지상4	3,551.0
14	노원구	시립	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로16길 15	1989.05.09.	1,163.0	지하1/지상3	2,452.0
15	노원구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상계동 963-5	2023.07.07.	1,602.0	지하1/지상5	4,360.0
16	은평구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연서로 415	1999.07.01.	10,069.1	지하1/지상3	3,408.1
17	서대문구	시립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독립문로8길 57	2005.06.14.	1,722.0	지하1/지상4	3,403.0
18	마포구	시립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서강로 68	1999.12.27.	1,286.0	지하1/지상4	2,819.8
19	마포구	구립	우리마포복지관	신촌로26길10	2011.11.17.	3,225.0	지하2/지상5	10,236.7
20	양천구	구립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목동로3길 106	1998.04.17.	2,141.7	지하1/지상2	3,051.5
21	양천구	구립	목동어르신복지관	목동중앙로3길21	2015.06.15.	889.0	지하2/지상3	1,804.9
22	양천구	구립	서서울어르신복지관	가로공원로60가길 16	2019.08.29.	1,566.4	지하2/지상3	4,168.5
23	강서구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화곡로61길 85	1999.09.01.	1,142.0	지하1/지상4	2,764.8
24	강서구	구립	마곡어르신복지관	마곡중앙5로 43	2026.4.15. (예정)	1,700	지하1/지상4	2,732.3
25	구로구	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새말로16길 7	1997.02.01.	1,157.0	지하1/지상4	2,799.4
26	금천구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흥대로51길 93-32	2000.07.01.	2,266.0	지상3/지하1	2,596.0
27	금천구	구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독산로72길 86-5	2011.11.01.	779.0	지하1/지상5	2,213.0
28	영등포구	구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도림로 482	2000.10.04.	2,669.0	지하1/지상5	3,317.0
29	동작구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상도로11길 7	2001.10.04.	1,574.0	지하1/지상3	2,021.0
30	관악구	시립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보라매로 35	1989.05.09.	3,554.0	지하1/지상3	3,152.0
31	서초구	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	강남대로30길 73-7	1998.03.20.	470.0	지하2/지상5	1,725.0
32	서초구	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방배천로 48	2009.06.12.	1,126.0	지하1/지상5	3,147.0
33	서초구	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대로54길 45	2009.07.01.	1,354.0	지하2/지상5	2,792.0
34	강남구	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삼성로 628	2005.01.10.	2,772.5	지상1, 4-6	2,146.9
35	강남구	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강남대로 128길 59	2006.09.27.	528.5	지하1/지상6	1,649.2
36	강남구	구립	강남시니어플라자	봉은사로 332	2011.09.08.	792.5	지하3/지상6	3,816.2
37	송파구	구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백재고분로32길 41	1996.11.21.	1,759.0	지하2/지상5	4,901.6
38	송파구	구립	문정노인종합복지관	송이로37길 11	2025.06.25.	1,715.0	지하1/지상4	3,257.4
39	강동구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동남로71길 32-5	2003.07.01.	1,986.0	지하1/지상6	4,103.0
40	강동구	법인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양계대로156길 28	1998.05.30.	3,300.0	지하2/지상1	2,991.0